

정 업무요령>에서 가산율 적용 대상이 되는 IBS 빌딩관리 자동제어 요소를 상정하고 있는데 “냉·난방, 급수·배수, 방범, 방재[방화(防火)를 포함함], 전기, 조명 등”이라고 밖에 서술되어 있지 않아,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지자체 세무 공무원이 해당 요소를 판단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한다.

2. IBS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

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세법 이하 관계 규정 및 기타 법령상 IBS에 대한 현행규정이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자 한다.

가. 지방세법 시행령

제6조(시설물의 종류와 범위)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.

7. 건물의 냉난방, 급수·배수, 방화,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

나.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(행정안전부장관 고시)

제19조(오피스텔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)

② 제1항에 따른 지수, 경과연수별 잔가율, 가감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가감산율 : 별표 8

□ 가산대상 및 가산율

구분	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	가산율	가산율적용 제외부분
I	(1)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- 빌딩관리요소 4가지 -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	0.05 0.10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공동주택(기숙사 제외), 복합건물 내 주택,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 용 건물, 주차전용건축물(「주차장 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, 이하 같다)

(이하 생략)